|  |  |  |
| --- | --- | --- |
|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경영류 전자상거래)의 외자비율 제한 취소에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보**  공신부통[2015]196호  당의 18기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지원하며 외국자본의 적극참여를 격려 및 유도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며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범위내에서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경영류 전자상거래)의 외자비율 제한을 취소하여 외자비율을 100%까지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외상투기업은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경영류 전자상거래) 허가 신청 시 외자비율에 대한 요구는 이 통보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허가조건·요구와 해당 심사비준 절차는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국무원령 제534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통신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유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며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발전환경을 조성하며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그가 대중창업·만민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 통보는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공업정보화부  2015년 6월 19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放开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经营类电子商务）外资股比限制的通告**  工信部通[2015]196号  　　为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精神，支持我国电子商务发展，鼓励和引导外资积极参与，进一步激发市场竞争活力，我部决定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开展试点的基础上，在全国范围内放开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经营类电子商务）的外资股比限制，外资持股比例可至100%。  　　外商投资企业要依法依规经营，申请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经营类电子商务）许可时，对外资的股比要求按本通告执行，其他许可条件要求及相应审批程序按《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国务院令第534号）相关规定执行。  　　各省、自治区、直辖市通信管理局要加强对外商投资企业的引导和监督，加大事中事后监管力度，切实维护用户合法权益，营造公平竞争的发展环境，促进电子商务持续健康发展，使之成为大众创业、万众创新的重要平台。  　　本通告自发布之日起执行。  工业和信息化部  2015年6月19日 |